	가정통신문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담 당 자	교사 서 0 0
		담당전화	070-7842-0762
전북 남원시 낙현길 17-14 / http://www.seojin.hs.kr / 063-631-1333(교무실) 063-631-1331(행정실)			

코로나19로 인한 의심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의 성적 처리에 대한 안내 말씀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별지10.3.)과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VII.※.3.)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2020학년도 2학기 1, 2학년 2차고사의 성적처리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교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교학업성적관리규정(P.23), 도교육청학업성적관리규정(P.92)에 있습니다.

□ 지필평가 시행 중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1.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기타증상(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의 마비)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함.**
2. **확진자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지필고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고사를 중지하고 추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고사 계획을 재수립함.**
3. **결시자의 성적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에 결시한 학생에게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기준점수의 100%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된 경우에는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고사 응시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시험실을 운영할 수 있음(대기실-전산실, 별도시험실-영어4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의 평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평가 증빙자료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가 없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는 가족이 재직 중인 회사 등의 **자체 자가 격리 조치**인지, **보건당국이** 격리통지서를 통해 격리 조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함 ***(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여부 반드시 확인)***

※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에 해당**하며, 2차(기말)고사 기간에도 등교할 수 없음***(시험장 제공하지 않음)***

※ 가족(동거인)이 격리통지서(보건당국 발행)를 받은 학생이 1학기 2차고사를 결시한 경우 최종 인정점 계산 방법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예시)

과 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 균	기준점수	평 균	
수 학	68.0	65	62.3	59.55

1) 68.0 : 65 = 62.3 : 기준점수
2) 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기준점수 × 1.0 = 59.55
4) 최종 인정점 = 59.55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또는 기타결석(감염우려)에 대한 학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미응시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에 준하는 인정점을 부여함

2020. 12. 15.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장